

부산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단3316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영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피고 사이에 2020. 10.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 10. 12.접수
제622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가) 원고는 2018. 5. 24. 및 같은 달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C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시설_단기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에 기하여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이 사건 각 대출			
연 번	보증일시 및 보증기한	보증번호	보증원금	대출은행	대출과목	대출일시	대출금액
1	2018. 5. 24.	E	170,000,000	D	일반자금	2018. 5. 25.	2억 원
	2019. 5. 24.						
2	2018. 5. 31.	F	189,000,000	D	일반자금	2018. 5. 31.	4억 원
	2019. 5. 31.						

나)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2)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B의 연대보증채무

C이 D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여 2021. 4. 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5. 2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C의 D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채권자	대위변제액(원)
제1번 신용보증약정	D	171,266,848
제2번 신용보증약정	D	190,280,021
합계		361,546,869

나. 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B는 2020. 10. 12.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20. 10. 12.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2018. 5. 24. 및 2018. 5. 31.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1. 4. 2. C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2021. 5. 21.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갑 제6, 7, 8,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표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363,155,000원이고, 소극재산은 471,262,446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B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B로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될 것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B는 지인 관계로 2018년 1월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온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나 임의경매절차 개시 없이 H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이 마쳐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를 선의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는 기존에 존재하던 대여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피고가 B에게 대여한 금전은 85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제출의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몰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경아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31.3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1092.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092.2분의 73.95

별지

적극재산

적극재산의 표시	가 액	증 거
이 사건 부동산	298,000,000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경남 창원군 I	24,336,000	감 제9호증의 1 (감정평가서)
경남 창원군 J(토지)	20,007,000	감 제9호증의 2 (감정평가서)
경남 김해시 K	20,812,000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합 계	363,155,000	

소극재산

채 권 자	금 액	비 고
D	108,000,000	원고의 보증금액을 포함한 C의 대출금 720,000,000원 중 C 소유의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1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H조합	173,762,446	2022. 2. 7.자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무)
피고	189,500,000	
합 계	471,262,446	